

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# 의원 발의 조례안

(2건)

거      창      군



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20-10	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	1
2020-11	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	10



**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**  
(최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0. 2. 24.
발 의 자	최정환 의원 (인)

**1. 제안이유**

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도도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·인권·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지급신청 및 결정, 지급시기 및 방법, 지원대상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라. 변동신고, 지급대장관리,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 ~ 제10조)

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련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 추경예산 반영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거창사건사업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0. 3. 20. ~ 3. 26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·인권·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유족”이란 「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생활보조비 지원) 거창군수는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100,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,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.
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 또는 조부모
4. 형제자매

② 제1항 2호(자녀), 4호(형제자매)에 따른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.

제5조(지급신청 및 결정)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(별지 제2호서식)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시기 및 방법)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.

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. 단,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7조(변동신고)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대장관리)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(별지 제4호서식)을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수)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<b>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</b>						처리기간
						10일 이내
희생자	성명			생년월일		
	주소					
신청자	성명			생년월일	(남/여)	
	연락처			희생자와의 관계		
	주소					
지급계좌	금융 기관명			계좌 번호	예금주	
<p>「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거창군수 귀하</b></p>						
신청자 제출서류			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
1. 신분증 사본 1부 2. 통장 사본 1부 3.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				1.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.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		
<b>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</b>						
※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						
확인사항	○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: ○ 지급대상자 주소 : ○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 :					
확인자	소속	직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		

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)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

- 거창사건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
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주소, 연락처, 희생자와 관계

※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,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정보는 “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”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.
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- 지원일로부터 5년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 
수집·이용  
동의 여부

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)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생활보조비 지급(대상, 비대상) 결정통지서

희생자	성명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(남/여)	희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연락처	
결정일			지급대상 여부	대상, 비대상		
비대상 결정사유						

귀하를 「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(대상, 비대상)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 . . . .

거창군수 (인)

##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신고서

희 생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수 급 자	성 명		생년월일	(남/여)	희생자와의 관 계
	주 소	( ☎ )			
신 청 인	성 명		수급자와의 관 계		
	주 소	( ☎ )			
신고사유					

본인은 「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 . .

신고인 (인 또는 서명)

거 창 군 수 귀 하





#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## (신재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1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0. 2. 24.
발 의 자	신재화 의원 (인)

### 1. 제안 이유

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·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1조)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, 기능, 직무, 운영,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2조 ~ 제 6조)

다.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7조)

라.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제2항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2,000천원/확보예정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안전총괄과

라. 기타사항

#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3. 20. ~ 3. 26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###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## 3) 비용추계서 : 붙임

#### 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  2. 지질·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  3.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-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필요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(변경을 포함한다)·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·고시
3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이다.

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

제7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9조(운영세칙) 이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(국가등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(시·군·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·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"시·군·구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하안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군·구 관리계획을 수립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·도지사,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(지방지하안전위원회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(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)

-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,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(이하 "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"라 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
  - 2.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중점관리시설 및 지역(이하 "중점관리대상"이라 한다)을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(변경을 포함한다)·고시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·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·고시하여야 한다.

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(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·도지사가,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지질·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  - 2.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  - 3.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·도지사가,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